

법 제9조제1항제8호	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------------	--

실(국)	담당 부서(과)	소관업무	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처리과 공통	공통 업무		1. 교육 기관 및 학교 법인 설립 허가 전의 관련 정보
			2. 국·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,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			3. 대규모 관광단지·문화산업단지 개발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